

## 국유재산특례 존치평가 실시, 국·공유재산 교환 및 국유재산 정기조사·감사 추진

- '26년 일몰이 도래하는 국유재산특례 106건에 대한 존치평가 실시
- 재정경제부, 서울특별시 및 제주특별자치도와 국공유재산 교환 추진
- 국유재산 실태조사 및 관리 강화를 위한 정기조사·감사 추진

재정경제부는 6.30일(화) 15:00 정부서울청사에서 허장 제2차관이 주재하는 '26년도 제7차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 부동산분과위원회를 개최하였다.

\* 참석 : 재경부 제2차관(주재), 행안부·조달청·산림청 정부위원, 민간위원

금일 회의에서는 국유재산 관리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활용 가치를 제고하기 위한 과제로서 국유재산특례 존치평가 결과(안), 국·공유재산 교환(안), 국유재산 정기조사·감사 추진계획 등 3개 안건을 심의하였다.

### [① 국유재산특례 존치평가 결과(안)]

정부는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제7조에 따라 국유재산 사용료 감면, 양여 등 국유재산 특례의 적정성 및 존치 필요성 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해 특례일몰제 및 존치평가제도를 도입하여 '25년 최초로 존치평가를 실시한 바 있다. '26년 일몰이 도래하는 특례는 총 106개로 정부는 전문연구원(조세연 등)과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평가단을 구성하여 효과성 및 타당성에 대한 평가를 진행했다. 금일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는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제15조 등 45개 특례는 존치('31.12.31.까지 5년 연장),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제17조 등 53개 특례는 조건부 존치('29.12.31.까지 3년 연장 및 특례활용현황 매년 점검), 특례 실익이 없는 「발명진흥법」 제10조 등 8개 특례는 '27.1.1.부터 폐지하는 것으로 의결하였다. 정부는 금일 심의결과 및 기타 법 개정 수요를 반영하여 국유재산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마련해 9월에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 [② 국·공유재산 교환(안)]

정부는 국유재산의 활용도 제고를 위해 지방정부와의 협력을 통해 국·공유재산 간 교환을 추진 중이다. 금일 회의에서는 국유재산 총괄청인 재정경제부와 서울특별시, 제주특별자치도 두 지방정부와의 국·공유재산 교환(안)을 심의하였다. 우선 서울시와는 재산 상호점유 해소를 위해 국가가 점유·사용 중인 신당동 기동본부 등 7건과 서울시가 점유·사용 중인 탄천물재생센터 부지를 교환하기로 합의하였다. 다음으로 제주도의 요청에 따라 도유지인 제주 경찰교육기관 신설 예정 부지와 국유지인 도청 인접 舊제주지방경찰청사를 교환하기로 합의하였다. 정부는 금일 심의결과에 따라 서울시, 제주도와 국·공유재산 교환건에 대한 계약체결 및 이전등기 등 후속 절차를 추진할 계획이다.

## [③ 국유재산 정기조사·감사 추진계획]

정부는 올해부터 국유재산에 대한 조사와 감사를 강화하고 그 결과를 교차 검증함으로써 국유재산 관리의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다. 그간 5년 주기로 시행하던 국유재산 총조사를 매년 시행하는 정기 조사로 대체, 향후 3년간 총 590만 필지의 국유재산을 전수 조사하고 조사 결과 문제가 드러난 국유재산에 대해서는 추가 현장 조사 및 올해부터 시행되는 국유재산 감사자료로 활용 예정이다.

또한 정부는 대규모로 국유재산을 위임·위탁받아 관리하는 19개 중앙관서 및 공공기관에 대해 관계기관 합동으로 3년간 감사를 추진한다. 시행 첫해인 '26년에 국유재산 총괄청인 재정경제부를 중심으로 조달청, 한국자산관리공사와 합동 감사반을 구성하여 주요 국유재산 관리부처와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감사를 진행하고 후속 조치를 포함한 감사 결과를 12월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에 상정할 계획이다.

정부는 향후 감사·조사 결과를 현재 추진 중인 AI 기반 국유재산 관리시스템과 연계하여 효과적인 국유재산관리에 활용할 예정이다.

허장 2차관은 “2025년말 기준으로 1,403조원에 달하는 국유재산을 적극 관리하고 개발·활용함으로써 국부(國富)를 창출하고 그 부를 국민들에게 돌려드릴 수 있다”라고 하면서, “국유재산 총괄청인 재정경제부를 중심으로 국유재산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적극적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체계적 시스템과 제도를 구축하는 데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 총괄 ]**

담당 부서	재정경제부 국유재산정책과	책임자	과 장	강경구 (044-215-5150)
		담당자	사무관	김상엽 (ksy7715@korea.kr)

**[ 국유재산특례 존치평가 결과(안) ]**

담당 부서	재정경제부 국유재산조정과	책임자	과 장	마용재 (044-215-5250)
		담당자	사무관	강중호 (2482kjh@korea.kr)

**[ 국·공유재산 교환(안) ]**

담당 부서	재정경제부 국유재산협력과	책임자	과 장	이상섭 (044-215-5160)
		담당자	사무관	차승원 (klassen@korea.kr)

**[ 국유재산 정기조사·감사 추진계획 ]**

담당 부서	재정경제부 국유재산협력과	책임자	과 장	이상섭 (044-215-5160)
		담당자	사무관	황철환 (chual0106@korea.kr)

**1. 국유재산특례 존치평가 개요**

- **[추진 배경]** 현재 187개 법률, 221개 특례가 특례제한법에 따라 운용 중이며, 국유재산특례지출예산 규모는 연간 약 1조원 내외
  - 국유재산특례제한법(‘22.11월)·시행령(‘24.11월) 개정으로 특례일몰제 도입 → ‘25년 국유재산특례 존치평가 첫 시행 이후 금년이 두 번째
- **[‘26년 평가개요]** ‘26년 존속 기한이 만료되는 106개 특례를 대상으로 존치평가 실시

〈 연도별 국유재산특례 일몰 도래 건수 〉

일몰 연도	2026	2027	2028	2029	2030	2031	2032	2033	2035	합계
특례 수	106	1	6	91	7	1	2	6	1	221

- (평가단) 조세연(존치평가 사무국)에 민간전문가로 평가단 구성(14명)
- (평가 기준) 국유재산특례 존치평가 운용지침 별표 기준\*에 따라 효과성·타당성을 정성적으로 평가
  - \* (효과성 평가) 입법목적 달성도(10), 특례 활용계획(15)·실적(15), 특례운용 관리의 적절성(10)
  - (타당성 평가) 특례 효과필요성(30), 특례지출 규모의 적정성(10), 특례 폐지 시 발생 문제점(10)
- (평가방법) 서면·대면 평가, 제도개선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①존치, ②조건부 존치, ③폐지로 결과 도출
  - 세부평가기준에 따라 50점 미만은 “폐지”, 50점 이상은 “존치”
  - \* ‘22년 국회에서 특례평가 제도 도입시 논의된 존속기준에 따라 사용료감면은 5년 연장, 양여·장기사용허가는 8년 연장
  - 조건부존치는 50점 미만인 경우로써 사업 운영상 사유, 외생적 요인 등으로 단기간 성과가 곤란한 경우에 한해 3년 후 재평가
  - \* 조달청에서 매년 조건부존치 특례에 대하여 각 부처의 특례활용실적을 점검 추진

## 2. 2026년도 국유재산특례 존치평가 의결 결과

평가	국유재산 특례조항			
존치 (45개)	한국도로교통공단법 제14조	장애인고용법 제56조	한국산업인력공단법 제15조	
	국민평생직업능력개발법 제48조	한국국제협력단법 제17조	한국국제교류재단법 제17조	
	수도법 제77조의2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제19조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제9조	
	한국해양수산연수원법 제11조	항만공사법 제27조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법 부칙 제5조	
	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 제11조	한국철도공사법 제14조	국가철도공단법 제26조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1조	인천국제공항공사법 제11조	한국공항공사법 제10조	
	기상산업진흥법 제17조	한국법학원 육성법 제3조	무형유산의보전및진흥에관한법률 제47조	
	국가유산기본법 제32조	공연법 제8조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 제35조	
	지방문화진흥법 제15조	국민체육진흥법 제22조	군인복지기본법 제11조	
	국회사무처법 제10조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제15조	이북5도등에관한특별조치법 제8조	
	아동복지법 제62조	영유아보육법 제39조의2	장애인복지법 제48조	
	모자보건법 제22조	청소년기본법 제57조	국유광지등채굴에관한법률 제3조의2	
	특수임무유공자에우뮓단체설립에 관한법률제65조의2	고엽제후유증등환자지원및단체설립 에관한법률 제20조의2	참전유공자에우뮓단체설립에관한 법률 제28조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제15조	노인복지법 제54조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10조	
	국립중앙의료원의설립및운영에관한 법률 제16조	대한적십자사조직법 제23조	암관리법 제38조	
	→ 존속기간 5년 연장('26.12.31 → '31.12.31)			
	조건부 존치 (53개)	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 제15조	전통시장및상점가육성을위한특별법 제18조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9조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 제16조		한국교통안전공단법 제23조	혁신도시조성및발전에관한특별법 제46조	
조달사업에관한법률 제32조		광주과학기술원법 제9조	지능정보화기본법 제12조	
방위사업법 제45조		물류시설의개발및운영에관한법률 제30조	선원법 제146조	
선원법 제118조		항로표지법 제39조	항로표지법 제43조	
해양환경관리법 제105조		택지개발촉진법 제11조	신항정수도후속대책을위한연기·공주지역 항정중심복합도시건설을위한특별법 제22조	
국토안전관리위원회법 제15조		철도사업법 제44조	법률구조법 제28조	
농업인등의농외소득활동지원에관한 법률 제14조		농어촌정비법 제23조	초지법 제18조	
국유림의경영및관리에관한법률 제23조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 제63조	재해위험개선사업및이주대책에관한 특별법 제17조	
국립소방병원법 제14조		동북아역사재단설립·운영에관한법률 제15조	한국연구재단법 제12조	
무형유산의보전및진흥에관한법률 제25조		전쟁기념사업회법 제13조	대한민국헌정회육성법 제3조	
자원봉사활동기본법 제16조		바르게살기운동조직육성법 제4조	사회복지사업법 제27조	
중증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특별법 제17조		청소년기본법 제55조	결핵예방법 제24조	
독도의용수비대지원법 제15조		대한노인회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일제하일본군위안부피해자에대한보호 ·지원및 기념사업등에관한법률 제13조	
한국장학재단설립등에관한법률 제19조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 제20조	여성기업지원에관한법률 제16조	
규제자유특구및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54조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제17조	용산공원조성특별법 제38조	
용산공원조성특별법 제17조		기업도시개발특별법 제26조	방사성폐기물관리법 제23조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의 유치지역지원에관한특별법 제11조	소방산업의진흥에관한법률 제15조			
→ 존속기간 3년 연장('26.12.31 → '29.12.31) 및 특례활용현황 매년 점검				
폐지 (8개)	발명진흥법 제10조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 제14조	금융위원회의설치등에관한법률 제49조	
	정보통신산업진흥법 제28조	정부법무공단법 제21 조의3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법 제10조	
	한국대학교육협의회법 제10조	한국자유총연맹육성에관한법률 제2조		
→ '27.1.1.부터 폐지				

## 참고 2

## 국·공유재산 교환 주요내용

### 1. 추진배경

- 국유재산의 가치 제고와 지자체와의 상생협력 차원에서 상호점유 해소를 포함한 국·공유재산 간 교환을 지속 진행 중
    - (제주) 도청 인접 舊제주지방경찰청사(국유지)와 제주 경찰교육기관 부지(도유지)의 교환을 요청
    - (서울) 국·공유재산 간 상호점유에 따른 재산권 제약 해결 차원에서 상호점유 해소를 위한 교환을 단계적으로 모색
- \* 선도지구(서울·부산·경남, '25년上), 광역지자체('25년下), 기초지자체('26년말) 대상 현황조사를 순차 추진 중 → 서울은 선도지구 조사 결과를 반영한 첫 교환 사례

### 2. 추진 방안

- (제주) 법적 적합성, 전략적 교환, 지자체와의 상생협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교환 추진

국가 소유(1건, 312억)	제주도 소유(2건, 307억)
■ 舊제주지방경찰청	■ 청소년아영장(212억), 명도암유스호텔(95억)

- (취득) 취득할 공유지에 경찰청의 심신회복 전문 특화교육기관을 건립함으로써 부지매입예산(약 180억원)과 사업 소요시간 절감
  - (처분) 舊제주지방경찰청사 처분을 통해 제주도의 도청 사무공간 부족문제 해결 및 행정·문화 복합단지 구축을 지원
- (서울) 택지활용 등 개발가능성, 사무의 성격, 안전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상호점유 해소를 위한 교환 추진

국가 점유·사용(7건, 132억원)	서울시 점유·사용(1건, 187억원)
■ (경찰시설) 성동경찰서(25), 신당동 기동본부(46), 청소년경찰학교(북아현동, 25), 북아현치안센터(7.6), 구기동 치안센터(7.7), 가락2치안센터(15), 마포경찰서(6)	■ (지방필수시설) 탄천물재생센터(187)

- (취득) 안전진단 E·D등급으로서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고, 입지상 향후 개발을 통한 국부창출 가능성이 높은 성동경찰서 등 7건
- (처분) 서울시가 계속 지방필수시설로 사용 중이고 국가 활용 가능성도 낮은 탄천물재생센터 1건

### 3. 향후 계획

- 교환 승인 후 계약체결·이전등기 등 후속 절차 추진